

성남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

검 토 보 고

의 안	
변 호	

2002. 10. 22

1. 제안사유

- 시의원의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과반수 이상의 민간인이 참여하는 별도의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여
- 국외출장의 공무 관련성·투명성·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함.

2. 주요개정 내용을 보면

- 동 규칙 제4조 (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) ①항중 “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한다”를 삭제하고 “공무국외 여행자를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 위원은 7인 이내로 의장이 위촉하되 대학교수 2인, 시민사회단체대표 2인, 의회부의장,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2인으로 하고 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이 된다.

3. 검토의견

- 지방의회별로 「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」을 제정하고 국외 여행시 동 규칙에서 정한 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국외여행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
- 불요불급한 해외여행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줄이는등 공무 국외여행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
- 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시민사회단체 대표, 대학교수등 민간위원을 과반수이상 참여토록 동 규칙을 개정하는 것은
-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아니라 이를 통하여 주민에 의해 선출된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여행에 대해 유권자인 주민들로부터 그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뿐 아니라
- 다양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
- 이미 시민들로부터 인증 받은 시민의 대표인 지방의회 의원이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일일이 시민들로부터 검증을 다시 받아야 하느냐는 부정적인 의견도 만만치 않으나
-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위에서 검토한 내용과 같이 설득력이 있고 유익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